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통보 및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,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변경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 : 583명 → 591명(8명 증가)
- 집행기관의 정원 : 571명 → 579명(8명 증가)

나.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변경(안 별표2)

다.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(안 별표3)

구 분	합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기 존	583	277	12	128	32	134
조 정	591	286	12	133	24	136
증/감	8	9	-	5	△8	2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별첨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 예고 : 2013. 4. 9 ~ 4. 29 (20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.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바. 비용추계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”를 “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83명”을 “59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71명”을 “57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이내	6%이내	26%이내	31%이내	27%이내	9%이상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 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비 율	6%이내	16%이내	23%이내	55%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 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	100%	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 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591	591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491	491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5	10	2	4	1	8
6급 이하	462	462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	1	1				
기능직 계	77	77				
기능6급 이하	77	77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 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58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71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<u>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91명</u></p> <p>-----</p> <p>-.</p> <p>1. ----- <u>579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583명에서 591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신규공무원 임용시 연간 인건비 증가분 산정함.
 - 신규공무원 1호봉 연간보수액은 20,000천원~25,000천원 수준임
 - 매년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률 감안하여 연간 25,000천원으로 계산함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산출내역	예산액	비 고
계		200,000	
공무원 인건비	25,000 × 8명	200,000	

다. 자원조달 방안

- 자체수입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